



제 2024 - 14호

2024학년도

출결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

● 담당자 : 교무부

● 연락처 :

☎ 070.7097.2575

구분	내용	제출자료													
제외	<p>▶ 2일 이내일 경우</p>	<p>[서식1]결석계 및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등) ※출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</p>													
	<p>▶ 연속 3일 이상일 경우</p>	<p>[서식1]결석계와 진료확인서, 의사 소견서, 진단서 중 1가지 반드시 첨부(*병명, 진료기간 등 포함) ※출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</p>													
	<p>▶ 미세먼지 기저질환 질병결석 기저질환(천식, 알레르기, 아토피, 호흡기질환, 심혈관질환 등)인 경우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감염병 위기 단계</th> <th>출결 사항</th> <th>인정 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관심</td> <td rowspan="2">질병결석</td> <td rowspan="2">학교 및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</td> </tr> <tr> <td>주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감염병 위기 단계	출결 사항	인정 요건	관심	질병결석	학교 및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	주의	<p>[서식1]결석계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※학기 초에 제출</p>						
	감염병 위기 단계	출결 사항	인정 요건												
관심	질병결석	학교 및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													
주의															
<p>▶ 부모·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결석 사유임을 학교장이 미리 인정한 경우 해당 ▶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'심각, 경계' 단계이며,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</p>	<p>[서식3]기타결석 학부모 확인서</p>														
<p>▶ 그 외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(태만, 가출, 출석거부 등)로 결석한 경우 ▶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징계 등)로 인한 가정학습 기간, 미인정유학, 여학연수 캠프, 출석인정 일수 초과한 교외체험학습,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교환학습, 사전 미허가 가족여행 등</p>															
출석 인정 제외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결혼</th> <th>형제, 자매, 부, 모</th> <th>1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입양</td> <td>학생본인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사망</td> <td>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증조부모, 외증조부모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</td> <td>3</td> </tr> <tr> <td>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결혼	형제, 자매, 부, 모	1	입양	학생본인	20	사망	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	5	증조부모, 외증조부모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3	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1	<p>[서식2]경조사 참가 확인서 제출</p>
	결혼	형제, 자매, 부, 모	1												
	입양	학생본인	20												
	사망	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	5												
증조부모, 외증조부모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	3													
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		1													
<p>▶ 감염병 질환(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) : 수두, 수족구병, 결핵, 일본뇌염, 유행성이하선염, 유행성결막염, 인플루엔자(독감), A형간염</p>	<p>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(*기간, 감염병명, 등교 가능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) ※등교 시 5일 이내 제출</p>														
<p>▶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당일에 대해 출석인정결석처리 ▶ 등교 수업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(쌍방향 실시간 수업 제외)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처리 가능 ※등교 시 5일 이내 제출</p>	<p>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</p>														
<p>▶ 기저질환: 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 ▶ 장애: 보건복지부 '장애복지카드' 소지자(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)에 한함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감염병 위기 단계</th> <th>출결 사항</th> <th>인정 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경계</td> <td rowspan="2">출석 인정 결석</td> <td rowspan="2">학교장 사전 허가</td> </tr> <tr> <td>심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감염병 위기 단계	출결 사항	인정 요건	경계	출석 인정 결석	학교장 사전 허가	심각	<p>[서식4]기저질환 및 장애학생 출석 인정 학부모 확인서와 증빙서류(의사 진단서(소견서) ※출석인정결석 3일전까지 신청</p>							
감염병 위기 단계	출결 사항	인정 요건													
경계	출석 인정 결석	학교장 사전 허가													
심각															

구분	내용	제출자료														
출석 인정 제식 교외 체험 학습 (가정 학습)	<p>▶ 총 20일(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연간 20일까지만 허가 가능) 예) 기존 교외체험학습 20일, 가정학습 10일 사용 - 불가능(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) 기존 교외체험학습 15일, 가정학습 3일 사용 - 가능(잔여일수 2일) 가정학습 20일 사용 - 가능(잔여일수 없음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84 271 1230 472"> <thead> <tr> <th>감염병단계</th> <th>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</th> <th>출석인정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관심</td> <td rowspan="2">가족 동반 체험학습, 인척방문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</td> <td rowspan="2">20일</td> <td rowspan="2">교외체 험 학습 기간에는 개인별 원격 수업은 제공 하지 않음</td> </tr> <tr> <td>주의</td> </tr> <tr> <td>경계</td> <td rowspan="2">가족 동반 체험학습, 인척방문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, 가정학습 등</td> <td rowspan="2">20일</td> <td rowspan="2">교외체 험 학습 기간에는 개인별 원격 수업은 제공 하지 않음</td> </tr> <tr> <td>심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심각 단계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유형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. (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확인: https://naver.me/55yVhEUd)</p> <p>▶ 1일 단위 운영을 원칙,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 (단,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. ※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※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. 	감염병단계	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	출석인정	비고	관심	가족 동반 체험학습, 인척방문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	20일	교외체 험 학습 기간에는 개인별 원격 수업은 제공 하지 않음	주의	경계	가족 동반 체험학습, 인척방문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, 가정학습 등	20일	교외체 험 학습 기간에는 개인별 원격 수업은 제공 하지 않음	심각	<p>[서식5~9]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(체험학습 1일 전 제출),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(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)</p>
	감염병단계	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	출석인정	비고												
관심	가족 동반 체험학습, 인척방문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	20일	교외체 험 학습 기간에는 개인별 원격 수업은 제공 하지 않음													
주의																
경계	가족 동반 체험학습, 인척방문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, 가정학습 등	20일	교외체 험 학습 기간에는 개인별 원격 수업은 제공 하지 않음													
심각																
<p>※ 각종 서식(신청서, 보고서 등)은 ‘학교 홈페이지-알림마당-공지사항’에서 참고해주세요</p>																

<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>

1.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 출석 인정 기간은 **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함을 원칙**으로 하며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해당학년도 기준 **연간 20일 이내**로 한다.

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**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**한다.
예시1) 기존 교외체험학습 20일, 가정학습 10일 사용 - 불가능(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)
예시2) 기존 교외체험학습 15일, 가정학습 3일 사용 - 가능(잔여일수 2일)
예시3) 가정학습 20일 사용 - 가능(잔여일수 없음)

※ '**가정학습**'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**심각**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.

※ 교외체험학습 유형: 가족동반여행, 친척집 방문, 답사·견학 활동, 체험활동

2.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정으로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. 확정된 출석 인정 일수, **불허기간**, 인정활동 유형, 인정 절차(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시기, 보고서의 양 등)의 학교 규정을 학부모(보호자)에게 홍보하고 시행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한다.
3. **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,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. (단,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)**
 - ※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.
 - ※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다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
 - ※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.
4. **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,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**
5.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**학교장의 결재**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, 출석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.
6. **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.**
7.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**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**으로 한다. 이때,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.
8.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**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**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는 **취합하여 5년간 원본 보관**한다.
9. 학원수강(예술체육계 포함),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,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으로 처리할 수 없다.
10.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보호자나 학생에게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을 강요할 수 없다. 특히, 수능 이후 고3 학생에 대한 강제적인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을 금지한다.

2024. 3. 7.

포 리 초 등 학 교 장

결 석 계

		담임	교무부장
결 재			전결
학년 반	번호	성명	
-			
결석 기간	2024년 월 일 ~ 2024년 월 일 ()일간		
결석 사유			
증 빙 서 류	2일 이내	<input type="checkbox"/> 의사진단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의사의견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진료 확인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담임선생님과 전화 통화로 확인	
	3일 이상	<input type="checkbox"/> 의사진단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의사의견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진료 확인서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 서류이어야 함)	
	(※ 질병결석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곳에 V하여 주세요)		
비고	증빙서류는 뒷면에 첨부하여 주세요.(질병결석만 해당)		

2024년 월 일

보호자명: (인)

포리초등학교장 귀하

경조사 참가확인서

		담임	교무부장		
결재			전결		
학년 반	번호	성명			
-					
참여 기간	2024년 월 일 ~ 2024년 월 일 ()일간				
참여 경조사	구분	대상	일수	확인	
	결혼	○형제, 자매, 부, 모	1		
	입양	○학생 본인	20		
	사망	○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		5	
		○증조부모, 외증조부모		3	
		○형제, 자매 및 그의 배우자			
○부모의 형제, 자매 및 그의 배우자		1			
비고	-토요일 및 공휴일, 재량휴업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.				
비고	1. 결혼시 : 청첩장 1부. 2. 입양시 : 입양관계증명서 1부. 3. 사망시 : 장례확인원(장례식장 발급) 또는 사망진단서 1부.				

2024년 월 일

보호자명: (인)

포리초등학교장 귀하

기타결석 학부모 확인서

()학년 ()반 ()번

성명 ()

1. 기타 결석 기간 : 20 . . . ~ 20 . . . (일간)

2. 학부모의견

위의 학생은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까지 (일간)

()로 인해 학교에 출석

하지 못하여 (못할 형편이므로) 이에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※기타결석 해당 사유

- 부모·가족 봉양, 가사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
-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‘심각, 경계’ 단계이며, 등교를 원하지 않는 경우
- ※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·졸업 불가

20 년 월 일

보호자: (인)

포리초등학교장 귀하

	담임	교무	교감
결재란			

기저질환 및 장애 학생 출석인정 학부모 확인서

()학년 ()반 ()번

성명 ()

1. 출석인정 기간 : 20 . . . ~ 20 . . . (일간)

2. 학부모의견

위의 학생은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까지 (일간)

기저질환()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여 (못할 형편이므로) 이에

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

※기저질환 고위험군 범위

- 폐질환자, 만성심혈관질환자, 당뇨병 환자, 신장질환자, 만성 간질환자, 악성종양환자, 면역저하자, 발달장애 학생 등

※출석인정서류

-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1회 제출(추후 제출 가능), 장애복지카드 소지자(의사진단서 발급)

※ 감염병 위기 단계인 **경계 심각 단계시만 출석인정 가능**하며 다른 단계에서는 질병결석으로 처리됨.

-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·졸업 불가

20 년 월 일

보호자: (인)

포리초등학교장 귀하

	담임	교무	교감
결재란			

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 신청서

※신청서 제출 기한 (1)일 이전, 보고서 제출 기한 (7)일 이내

담임	부장	교감	교장
	전결	전결	

성명				학년 반 번	휴대폰		
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 20일	신청 기간	1일 기준	20 년 월 일 ~ 월 일			총 ()일간	
		반일 기준	날짜	20 년 월 일			
		(4시간 미만)	시간	시 분	~		
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및 불허기간 확인						(○ , ×)	
※ 필요시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							
학습형태	◦가족동반여행() ◦친·인척 방문() ◦답사·견학 활동() ◦체험활동() ◦가정학습()						
목적지				(숙박시) 숙박장소			
보호자명			관계		휴대폰		
인솔자명			관계		휴대폰		
목적							
교외체험 학습계획							
학생안전	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(담당)교사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.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
위와 같이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을 신청합니다.							
				20 년 월 일	보호자 :	(인)	
					학생 :	(인)	
포리초등학교장 귀하							

----- (이하 담임 작성) -----
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

성명				학년 반	제	학년 반 번
본교 출석 인정 기간 연간 20일	신청 기간	1일 기준	20 년 월 일 ~ 월 일 () 일간			
		반일 기준	20 년 월 일			
		(4시간 미만)	시 분	~	시 분 (시간)	
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						
금회까지 누적 사용 기간 ()일				20 . . .	포리초등학교 ()학년 ()반 담임교사 :	(인)
						보호자님 귀하

- 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(또는 문자)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.
- ※ 신청서 제출 기한은 (1)일 이전, 보고서 제출 기한은 (7)일 이내
- ※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(담당)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(담당)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.
- ※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(담당)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 미이행의 경우 시·군·구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[서식8]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단계의 경우에만 신청가능

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」 신청서

*신청서 제출 기한 (1)일 이전, 보고서 제출 기한 (7)일 이내

담임	부장	교감	교장
	전결	전결	

성명	학년 반 번		휴대폰
본교	신청 기간	20 년 월 일 ~ 월 일() 일간	
출석인정기간 연간 ()일	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불허 기간 확인 ※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		(○ , ×)
학습형태	가정학습		
장 소	자택 주소:		
보호자명	관계	휴대폰	
목적			
교외체험학습 (가정학습) 계획	교시	교과	※ 학습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. (본 양식은 1일 예시이며, 2일 이상일 경우 양식 변경 가능)
	1		
	2		
	3		
	4		
	5		
6			
학생안전	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(담당)교사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.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
위와 같이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」을 신청합니다.			
20 년 월 일			
		보호자 :	(인)
		학생 :	(인)
포리초등학교장 귀하			

(이하 담임 작성)
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통보서

성명	학년 반		제	학년	반	번
본교	신청 기간	20 년 월 일 ~ 월 일() 일간				
출석 인정 기간	허가 기간	20 년 월 일 ~ 월 일() 일간				
연간 ()일	위와 같이 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					
금회까지 누적 사용 기간 ()일	20		포리초등학교 ()학년 ()반 담임교사 : (인)			
보호자님 귀하						

- *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(또는 문자)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.
- *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,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습니다.
- *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(담당)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(담당)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.
- * 교외체험학습이 5일 이상 연속될 경우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(담당)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. 미이행의 경우 시·군·구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[서식9]

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결과 보고서

담임	부장	교감	교장
	전결	전결	

성명			학년 반	제 학년 반 번		
가정학습 기간			20	년	월	일 ~ 월 일 () 일간
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장소						
학습형태	가정학습					
제목						
교외체험학습 (가정학습) 결과	교시	교과	※ 학습계획서에 따라 학생이 공부한 학습결과물, 작품 등을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. (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양식 변경 가능)			
	1					
	2					
	3					
	4					
	5					
	6					
위와 같이 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」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						
20 년 월 일						
						보호자 : (인)
						학생 : (인)
포리초등학교장 귀하						

※ 보고서 제출 기한: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종료 후 (7)일 이내